

제415회 임시회
'24. 3. 14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3월 5일
-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3. 제안사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출연 개요

(단위 : 백만원)

출연기관	출연액			출연 필요성
	계 (A=B+C)	기정 (B)	금회추경 (C)	
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	1,992	1,936	56	- '24년 국비 확보(5억원)에 따른 재원내역 및 도비 편성액 변경

※ 관계법령(출연근거)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(시도 서비스원의 사업) 및 제29조(보조금 등)

5. 주요내용

□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추가 지원 : 56백만원

- 인건비(증 144백만원), 운영비(감 23백만원), 사업비(감 65백만원) 조정 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

※ 재원조달 계획 : 당초예산 도비 편성액 1,492백만원,
국비 확보액 500백만원(복지부 가내시 '23.12.28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당초 출연액이 100% 도비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 사회서비스원 국비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도비 편성액을 변경하고,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2024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출연 변경액은 총 19억9천2백만원으로 기존 19억3천6백만원 대비 2.8%인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2024년도 출연금 증액 규모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4 예산액(A) (도비 1,936)	1회 추경예산(B) (국비 500, 도비 1,492)	증감(B-A)
계	1,936	1,992	56
인건비	1,016	1,160	144
운영비	310	287	△23
사업비	610	545	△65

-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증감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 - (인건비) 일상돌봄 서비스, 긴급돌봄, 대체인력지원사업 수탁 등 국가 위탁사업 수행 및 도 복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1억4천4백만원 증액(15→18명)
 - (운영비) 광고비,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2천3백만원 감액
 - (사업비) 보건의료·복지 플랫폼 구축 등 사업비 6천5백만원 감액
- 2024년 사회서비스원 국비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도비 편성액 변경은 도비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인건비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확장에 따라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, 운영비와 사업비는 감액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 출연의 법적근거 및 출연금 세부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, 출연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운영비와 사업비 감액이 사업의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